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C B 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183호

의 안 명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의 결 일 2020. 5. 11.

주 문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5월 11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별지]

국민의 생활을 위한 정부기관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202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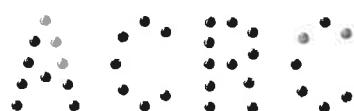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A C R C

목 차

I. 추진개요	1
II. 관련현황	2
III. 문제점	5
1. 금융거래목적 확인 법적 근거 미흡	5
2. 금융회사별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각각	8
3.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에 대한 안내 미흡	11
IV. 개선방안	12
1.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근거 마련	12
2. 제출서류 통일 및 간소화	14
3.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사전안내 강화	15
V. 조치사항	16
(참고1) 관련법령	17
(참고2) 금융회사 관련 약관 등	19



I. 추진개요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과제발굴 : 국민신문고(금융거래목적 확인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이므로 개선 건의, '19. 11월)

□ 추진배경

-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는 '12. 11월부터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15년부터 통장발급 요건 강화
 -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대포통장에 대한 대책 시행 이후 통장개설 관련 국민불편 문제 지속 제기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제출이 법률, 은행 약관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은행창구 현장에서 불만 민원 지속 발생
 - 금융회사별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제각각의 증빙서류를 요구함으로써 국민 불편 및 혼란 야기
 - 은행창구, 홈페이지 내 관련 안내가 부족하여 통장 개설자가 재차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사례 발생
-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 및 금융거래 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2020. 2. ~ 3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2020. 3. ~ 4월 관계기관 의견조율

II. 관련현황

□ 은행계좌 개설현황

○ '16년말 기준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수는 총 2억 5,937만개

- 참고로 이중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 지난 미사용 계좌는 총 1억 1,899만개

※ 국내 16개 은행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은행권의 개인계좌 현황('16년말 기준, 금융감독원 자료) >

(단위 : 만개, 억원)

구 분	전체계좌		1년 이상 미사용계좌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원화예금	24,933	6,109,237	11,534	133,021
외화예금	337	151,635	247	18,684
예금 합계	25,270	6,260,872	11,780	151,705
신 택	668	690,256	119	22,228
총 계	25,937	6,951,128	11,899	173,933

□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시중 은행 등과 함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12. 11월 시행

※ '12. 1. 31 금융위, 방통위,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

-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목적으로 사전방지, 사용억제, 사후제재 단계로 구분한 대책 수립

사전방지 단계	계좌개설시 통장 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화 및 금융거래목적확인 제도 대폭 개선
사용억제 단계	모니터링 기법 및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의 집중 공유를 통해 대포통장의 지급정지율을 높임으로써 대포통장 사용을 억제
사후제재 단계	통장 양도고객에 대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 개설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및 여신취급 심사 등에 양도이력 정보 활용

□ 금융거래목적 확인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외국인, 미성년자로부터 통장개설 요청시 제출받던 서식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로 통합
 - 최초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외국인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 소지자, 미성년자 등'에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15. 7월부터 신규 계좌 개설시에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목적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징구 가능
- 서류징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 거절
- '15. 7월부터 동일인 다수계좌 개설시 확인강화를 이유로 모든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징구
 - ※ 다만, 서류 제출이 어려운 주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은행창구 100만원, 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를 각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 도입
- 최근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목적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있는 다양한 자료를 요구

<'12. 11월 당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오니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대상 : 단기·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여권(또는 여권지정명사)만을 소지한 외국인, 기타 은행이 정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	--

■ 고객확인사항 : 해당되는 []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예	아니오
공통	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통장/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만·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② 타인으로부터 신용대출상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법인통장 개설시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사 고을되거나 고을을 막속받고 계좌 개설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여권·여행자 증명서 소지자	① 국내에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가 있습니까?	[]	[]
	② 여권(여행자 증명서)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본국 신분증, 신용카드, 지로 물 공과금 영수증 등)	[]	[]
	③ 국내에 직입(개인사업자포함) 또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직접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산세영수증 등)	[]	[]
	※ 여권·여행자 증명서 소지자의 비대면 거래는 ①과 ②, ③중 하나 이상 충족시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틀림없이 기재 하였습니다.

201

고객명

(인/서명)

■ 고객 기재 사항에 따라 증빙자료(예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여권·계좌 개설 동의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등록된 적이 있는 고객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개설 목적이 명확하다고 은행이 인정 한 경우에만 신규 가능합니다.

< 우체국 은행 금융거래목적별 증빙서류 >

목 적	증빙서류
용돈·생활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의 확인서 등
각종 모임	구성원 명부, 모임회칙 등
공과금이체	기존 공과금 납입 영수증(명세서) 등
자동이체	(계좌간 이체) 해당 통장사본과 자동이체 신청서 등 (보험료 이체) 보험증서와 자동이체 신청서 등
급여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표 등
아파트관리비	기존 관리비영수증(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입주민 증빙서류 등
아르바이트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법인(사업자)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기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금	사업거래 확인서, 거래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연구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명서 등
기타	기타 목적에 따른 객관적 증빙서류

Ⅲ. 문 제 점

1 금융거래목적 확인 법적 근거 미흡

○ 금융거래목적 확인 및 통장개설 제한 관련 법적 근거 부재

- 현행법령상 자금 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근거 규정 부재

※ (참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 (참고)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출신청·금융상품 해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4)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본인 확인 및 관련 자료 요구

-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은행장 간 TF 협의와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지침·지도(협조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관련 제도 시행 중

※ (참고)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대비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응조치 가능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등)①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생략)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 관련 금융감독원 지침(협조요청 사항,)

- ('12. 10. 30)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등의 통장개설 요청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징구 및 증빙자료 확인과 이에 따른 개설목적이 명확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규개설이 가능하도록 요청
- ('15. 7. 30) 동일인 다수계좌 개설시 신원 및 개설목적 확인 등 내부통제 강화 요청, 다만 금융거래목적 확인 관련 증빙자료는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 사항은 단순 행정지도로 볼 수도 있으나, 금융회사는 미이행시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선 현장에서는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

○ 금융회사의 약관에도 명시하지 않고 관련 제도 운영

-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대방과의 계약여부, 내용을 결정할 자유가 있으나 금융서비스의 공공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약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함
- 특히 계좌개설 제한, 거래금지 관련 사항은 금융회사와 국민간 거래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약관상 근거 마련 필요
- 그러나 공정위 '예금거래기본약관', 금융회사 각종 약관에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와 '자료 제공·제출시 거래제한' 근거가 없는 실정

※ (참고) 대부분 금융회사는 '12. 11월 금감원 요청에 따라 일부 상품 약관에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근거만 마련

< 기업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 >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장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저축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 설명의제

- ① 거래처는 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거래처의 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설명확인 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 기업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약관 >

제3조(거래중지계좌)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은행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계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 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거래가 없는 계좌

제5조(거래제한) ①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② 거래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발행 한도금액 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다른 은행 포함)과 직접 거래할 때에는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없이 통장개설을 거부함에 따라 관련 민원 빈발

- 당초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시 관련서류를 요구하였으나, '15년부터 모든 금융거래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민원 증가

【 민원 사례 】

- 대포통장근절대책의 일환을 추진중인 입출금 계좌 개설에 따른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요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이므로 폐기** 건의('19.11월, 국민신문고)
- 통장개설 요청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최근 금융거래가 없다고 통장발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므로 개선 요망('19.5월, 국민신문고)

○ 금융회사가 거래목적별 증빙자료를 자율적으로 결정

- '15. 7월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 시 증빙자료는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별 요구자료 제각각
- 일부은행은 급여계좌 개설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요구하지만, 일부는 사원증, 합격증, 고용계약서, 최근 3개월간 타행 급여이체 내역 등 요구서류 추가

< 금융회사별 금융거래목적 유형별 증빙서류 예시 >

거래목적	우체국	우리은행
용돈·생활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의 확인서 등	(없음)
각종 모임	구성원 명부, 모임회칙 등	연락처가 포함된 구성원 명부, 모임 회칙(정관)
공과금이체	기존 공과금 납입 영수증(명세서) 등	(없음)
자동이체	(계좌간 이체) 해당 통장사본과 자동이체 신청서 등 (보험료 이체) 보험증서와 자동이체 신청서 등	(없음)
급여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표 등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명세표, 고용(연봉)계약서, 재직증명서, 합격증, 사원증, 최근 3개월 타행급여이체 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아파트 관리비	기존 관리비영수증(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입주인 증빙서류 등	(없음)
아르바이트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없음)
법인(사업자)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원, 재무제표, 카드가맹점 가입 및 승인신청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신설법인)
사업자금	사업거래 확인서, 거래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등	(없음)
연구비	연구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명서 등	(없음)
연금수급	(없음)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급 증빙서류
대출거래	(없음)	원리금 납입 자동이체 통장 및 용자상담신청서 사본
해외사용	(없음)	입학허가서, 항공권, 비자 등(유학, 장기체류에 한정)
기 타	기타 목적에 따른 객관적 증빙서류	거래목적 증빙자료

○ 동일한 거래목적 확인임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제출서류 간소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도계좌(창구거래시 100만원, ATM기기 인출·전자금융거래시 30만원 거래한도 제한) 개설 허용
-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는 한도계좌로 개설되고 있으며, 이를 해제하고 일반계좌로 전환할 경우 비대면으로 거래목적 증빙 자료 요구
-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서류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금융회사 계좌개설, 한도계좌 해지·전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출 서류가 적고, 여러 서류 중 1개 선택 가능

< 카카오뱅크 한도계좌 개설 안내 >

< 카카오뱅크 한도계좌 해제신청 안내 >

계좌개설 취소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이체한도 안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합니다. 이후 고객님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등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면, 일반계좌로 전환되어 한도가 상환됩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1일 최대한도)
카카오뱅크 앱 이체	200만원
ATM 이체 및 출금	이체 100만원/출금 100만원

금융거래 한도계좌(파생잔자) (1일 최대한도)

카카오뱅크 앱 이체, ATM 이체 및 출금	통합 100만원
-------------------------	----------

일반계좌 (1일 최대한도)

카카오뱅크 앱 이체	5억원 (OTP기준)
ATM 이체 및 출금	이체 3,000만원/출금 600만원

☑ 위 안내에 대해 확인하고 이해합니다.

← **한도계좌 해제 신청**

제출 서류 안내 (택1)

- (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방법 : 팩스수신(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신청), 인터넷발급(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직장가입자'만 해당됩니다.
- (아르바이트)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고지서**
본인의 주소지로 본인에게 청구된 고지서만 유효합니다.
- 관리비 고지서**
품호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고객정보 상 자택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본인에게 과세된 최근 6개월이내의 고지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모니터 촬영 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 검토를 위해 한도계좌 해제까지 3영업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금융회사 창구 내 제도 소개, 제출서류 등 안내 부재

-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시행 및 확대 당시에는 지점 등 입구 내 홍보물을 부착하였으나 현재는 안내가 거의 없으며 일부 창구 직원 책상 위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홍보물만 부착

【 현장의견 】

- '15년 금융거래목적 확인 확대 당시 은행창구 대기 공간 등에 홍보 배너 등을 부착하였지만, 현재는 거의 안내가 없는 상황임('19. 12월, ○○은행 담당직원 의견)

- 대부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그 증빙자료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실정

< 기업은행 홈페이지내 금융거래목적 확인 정보 >



< 우체국 창구 안내문 >



○ 통장개설시 금융회사를 여러 번 재방문하는 불편 발생

- 통장개설자가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서 서류를 준비하거나 금융회사를 우선 방문하여 창구직원 안내를 받아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재차 방문해야 하는 사례 지속 발생

【 민원 사례 】

- 연립주택 관리비 통장을 만들고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추가 개설을 위해 이전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니 회의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통장 하나에 몇시간을 낭비하고 재방문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20. 1월, 국민신문고)

IV. 개선방안

1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근거 마련

○ 법령에 금융거래목적 확인 근거 규정 신설

- 통장개설 시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개설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계좌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의 약관 또는 내규에 관련 근거 마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6 신설

※ 노숙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 보조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금융거래목적 확인' 근거 마련 필요성 검토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정안(예시)
(신설)	제2조의 6(금융거래목적 확인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 확인 결과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개설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과 제2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세부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통일 및 간소화

○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방식 간소화

-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종류를 최대한 제시
- 유사한 서류의 중복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가 증빙서류 예시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
- 이용자 편의를 위해 거래유형별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예시를 약관 또는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의 약관 또는 내규 개정 지침 마련.
시행(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 약관 또는 내규 개정(안) 예시(기업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

현 행	개정안(예시)
제5조(거래제한)①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②거래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 받은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발행 한도 금액 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 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다른 은행 포함)과 직접 거래할 때에는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거래제한) ①-----(생략) ②-----(생략) ③거래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표 1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은행은 거래처 등이 제3항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⑤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하기가 어려워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거래목적별 증빙서류(별표 개정안) 예시 >

거래목적	증빙서류 예시
용돈·생활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의 확인서 중 1
각종 모임	구성원 명부, 모임회칙 중 1
공과금이체	기존 공과금 납입 영수증 또는 명세서
자동이체	(계좌 이체) 해당 통장사본, 자동이체 신청서 중 1 (보험료 이체) 보험증서, 자동이체 신청서 중 1
급여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표 중 1
아파트 관리비	기존 관리비영수증(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입주민 증빙서류 중 1
아르바이트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중 1
법인(사업자)	물품공급계약서, 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중 1
사업자금	사업거래 확인서, 거래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중 1
연구비	연구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명서 중 1
연금수급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급 증빙서류 중 1
대출거래	원리금 납입 자동이체 통장, 용자상담신청서 사본 중 1
해외사용	입학허가서, 항공권, 비자 등(유학, 장기체류에 한정) 중 1
기 타	기타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한도계좌 해제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한도계좌 해제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과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거래유형별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종류 또한 약관 또는 내규에 명확히 제시하되, 일반 금융회사 통장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의 약관 또는 내규(별표 포함) 개정
지침 마련·시행(금융감독원 →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 약관 또는 내규 개정(안) 예시(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

현 행	개정안(예시)
제4조(거래제한)이 예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예금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거래제한)①카카오뱅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고객이 한도계좌 해제를 신청할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때 별표 1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은행은 거래처 등이 제3항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금융거래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예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금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또는 제1항에 의한 한도계좌 해제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3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사전 안내 강화

○ 금융회사 창구, 홈페이지 내 관련 제도 소개 및 제출서류 안내

- 홈페이지 내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정보 제공, 배너광고 상시 노출
- 거래처 지점 입구, 대기장소 등에 안내 문구 부착
- 창구직원, 청원경찰 등이 관련사항을 미리 안내하도록 직원 교육 강화

⇒ 금융기관 내규(업무지침) 개정 지침

마련·시행(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 대기장소 안내 사례 >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조치사항 및 기한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 기한
(1)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근거 마련	○ 법령에 금융거래목적 확인 근거 규정 신설(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자료 제출, 계좌개설 제한 근거 포함) ※ 노숙자 명의 대포통장 개설 대응을 위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근거 마련 필요성 검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6 신설 ※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의 약관 또는 내규에 관련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1. 4월
(2) 제출서류 통일 및 간소화	○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기준 통일(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간소화 대책 포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의 약관 또는 내규(별표) 개정 지침 마련·시행(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한도계좌 해제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자료 제출 및 종류, 계좌개설 제한 근거 포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의 약관(별표 포함) 또는 내규 개정 지침 마련·시행(금융감독원 →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감독원	2020. 10월
(3)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사전 안내 강화	○ 금융회사 창구, 홈페이지 내 관련 제도 소개 및 제출서류 안내(홍보물 부착,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 금융기관 내규(업무지침) 개정 지침 마련·시행(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참고 1 관련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경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참고 2 금융회사 관련 약관 등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기업은행)

제1조(적용범위)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이자) ① 이 예금 이자는 다음 기준일에 셈하여 원가일에 원금에 더한다. 다만, 당좌예금과 예금거래 실적이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예 금 별	이자계산 기준일	원 가 일
보 통	매년 6월, 12월의 둘째 토요일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
저 축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둘째 토요일	
기업자유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토요일	
가계당좌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넷째 토요일	

② 제1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다만, 기업자유예금의 이자는 입금액마다 예금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액을 뺀다.

③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 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거래중지계좌)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은행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 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거래가 없는 계좌

제4조(은행제공 수표·어음용지에 의한 거래)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어음 용지로 거래하여야 하며 1,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내역(발행일, 지급기일, 발행금액 등)을 금융결제원의 어음발행 관련 네트워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준다. 다만, 거래처가 요청한 양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거래제한) ①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②거래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발행 한도금액 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다른 은행 포함)과 직접 거래할 때에는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수표·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 ① 은행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급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②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다만, 수표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③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특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다.

1. 각종 이자,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 원금, 수출어음 부도대전
3.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4.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받은 금액

제8조(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9조(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 은행은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표·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 ①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
2.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다만, 32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코된 거래인감(또는 서명)이 틀림없다고 인정되

는 인감(또는 서명)을 수표 뒷면에 날인(또는 서명)한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

4. “지시금지”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

②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인과의 거래)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어음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또는 서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할 수 있다.

제12조(당좌·가계당좌예금 계약의 해지) ① 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은행은 거래처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은행이 정한 당좌·가계당좌예금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한다.

제13조(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되더라도 은행은 지급하지 않으며 거래처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당좌예금 거래보증금) ①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②은행이 제1항의 보증금액을 변경하였거나 거래처가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 하여야 하고, 남으면 은행은 그 차액을 거래처에게 돌려준다.

③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1항의 보증금을 거래처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변제로 충당한다.

④은행은 제3항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어음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준다. 다만,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음제재금 만큼을 빼고 돌려준다.

⑤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카카오뱅크)

제1조 적용범위

- ①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이자

-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그에 이은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1. 보통예금 : 매월 네번째 금요일
 2. 기업자유예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네번째 금요일
-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모바일앱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금리로 셈한다.
- ③ 이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거래중지계좌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이하 “카카오뱅크“라 한다)는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거래중지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등을 신청한 때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제4조 거래제한

이 예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예금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정 본 입 니 다 .

2020. 5. 13.

국 민 권 의 위 원



A C R C